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개황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概況
1958年<제1회>~1972年<제13회>

文化財專門委員 鄭華永

차 례

1. 序 2. 現況과 分析 1)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規程 2) 競演大會 審査基準 3) 年度別 競演傾向 4) 年次別 賞金追移	5) 參加市道 評價順位 3. 提言 附錄 年度別 Program 年度別 受常現況
--	--

1. 序 慶祝祭 慶祝祭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비롯된지도 어언간 16년이란 연륜(年輪)이 거듭되고 있다. 1958年 개최(開催)된 건국(建國) 10주년(週年)을 맞이하는 경축제(慶祝祭)로 마련된 이 대회(大會)가 전국(全國)에 산재(散在)되어 있는 향토문화(鄉土文化)의 집약(集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의 출범(出帆)이 되었던 것이다.

당초(當初)에는 건국(建國) 10주년(週年) 경축행사(慶祝行事)로 시작(始作)되었던 축제민속(祝祭民俗)놀이가 1961년이 되면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의(依)하여 전승문화(傳承文化)의 발굴(發掘) 및 보존(保存)을 위하여 전국적(全國的)이고도 정기적(定期的) 예년행사(例年行事)로 발족(發足)하게 된 것이다.

과거 과도적 현상(過渡的 現象)에서 야기(惹起)된 혼미(混迷)한 사회의식(社會意識)과 이 틈바구니에서 범람(汎濫)하던 외래문화(外來文化)에 젖으려던 풍조(風潮)에서 자기(自己)를 자각(自覺)하고, 나아가서는 수장하고 슬기로운 전승문화(傳承文化)를 되찾으려는 주체의식(主體意識)에서 정부당국(政府當局)에 의(依)한 거국적(舉國的)인 행사(行事)로 발전(發展)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勿論) 각지방(各地方)에도 지방(地方)나름의 규모적(規模的) 예술제(藝術祭)가開催(開催)되고 있다. 예(例)컨데 경주지방(慶州地方)의 신라문화제(新羅文化祭), 전주지방(全州地方)의 전라문화제(全羅文化祭), 광주지방(光州地方)의 호남예술제(湖南藝術祭), 충북영동(忠北永同)의 난계문화제(蘭溪文化祭), 진주 개천예술제(晉州 開天藝術祭) 등(等)이 있으나 이는 그 지방(地方)의 향토적 문화예술(鄉土的 文化藝術)의 축제(祝祭)이다. 따라서 전국적(全國的)이

며 純粹民俗祭典(純粹民俗祭典)은 못되며 이 점(點)에 있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는 큰 의의(意義)를 가지며 전통(傳統)의 문화 발굴보존(文化發掘保存) 및 진흥(振興)을 위해서도 거듭 유지(維持) 발전(發展)되어야 겠다.

또한 당국(當局)에서 文化財保護法(文化財保護法)에 의(依)하여 48종(種)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지정(指定)되었지만 이 중 수공예(手工藝)를 제(除)하면 3분의 2에 가까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가 아래 표(表)와 같이 본민속예술경연대회(本民俗藝術競演大會)에서 발굴(發掘) 또는 상연(上演)되었던 것이다. 이런 면(面)에서 본 경연대회(本競演大會)는 문화예술(文化藝術)의 개발(開發)에 중대(重大)한 임무(任務)를 띠고 있는 것이다.

無形文化財로 指定된 種目

<1972年 現在>

指定番號	指定年月日	指定名稱	備考
2號	1964. 12. 7	楊州別山台놀이	京畿
3 "	"	꼭두각시놀음	"
5 "	1964. 12.24	판소리春香歌	
6 "	"	統營五廣大	慶南
7 "	1970. 7. 18	固城 "	"
8 "	1965. 2. 15	강강술래	全南海南
9 "	"	恩山別神祭	忠南
11 "	1966. 6. 29	農樂12次	慶南晋州
12 "	1967. 1. 16	晋州劍舞	"
13 "	"	江陵端午祭	江原
15 "	1967. 3. 31	北青獅자놀이	咸南
17 "	1967. 6. 16	鳳山탈춤	黃海
18 "	1967. 12.21	東萊野遊	釜山
21 "	1968. 12. 3	勝戰舞	慶南忠武
24 "	1967. 1. 7	安東車戰놀이	慶北
25 "	1969. 2. 11	靈山쇠머리대기	慶南
26 "	1969. 2. 11	靈山줄다리기	"
29 "	1969. 9. 27	西道소리	平南
33 "	1970. 7. 22	고싸움놀이	全南光山
34 "	"	康翎탈춤	黃海
43 "	1971. 2. 26	水營野遊	慶南
44 "	1971. 3. 16	韓將軍놀이	慶北慶山
		以上	22種
指定을 爲한 調査完了分			
		牙山줄다리기	忠南
		南道들노래	全南

국가(國家)란 한 사회적구조(社會的構造)에 있어서 그 사회(社會)의 기층문화권(基層文化圈)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주축(主軸)은 곧 그 사회(社會)의 상원문화(上源文化)인 것이다.

이 상원문화(上源文化)는 장구(長久)한 역사(歷史)의 흐름과 함께 문화(文化)는 시대적 가

변성(時代的 可變性)을 띠고 있어 일차적 상원문화(一次的 上源文化)를 인식(認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를 올바르게 발굴(發展)시키기 위하여는 변화(變化)된 문화형태(文化形態) 중(中)에서도 우리의 본원적 문화(本源的 文化)의 발견(發見)에 노력(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작업(作業)의 가장 타당(妥當)한 방법(方法)과 노력(努力)은 현재(現在) 우리 주변(周邊)에 전(傳)해지고 있는 문화잔존(文化殘存)(Survival)에 근거(根據)하여 발굴(發掘) 또는 복원(復元)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잔존(文化殘存)은 어떠한 형태(形態)로 존재(存在)하는가, 유형(有形)의 경우는 유적유물(遺跡遺物)이며, 무형(無形)일 때는 잠재(潛在)된 민속(民俗)에 존재(存來)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文化)의 참다운 (祭典)은 어디까지나 전승문화(傳承文化)인 민속예술(民俗藝術)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적 문화창조(時代的 文化創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과제(課題)를 안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13회(回)를 거쳐 음에 제(際)하여 이에 대(對)한 개황(概況)을 자료(資料)에 의(依)해서 제시(提示)하고 현황(現況)에 대(對)한 몇가지 분석(分析)과 제언(提言)을 하고져 한다.

2. 현황(現況)과 분석(分析)

먼저 競演大會의 規程과 同 審査基準, 施賞制度의 年次的 追移와, 競演內容으로서 出演되는 種目과 傾向, 競演結果로서의 參加市道の 評價順位에 對한 概況과 이를 分析하여 보았다.

1)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規程(案)

여기서 規程이라 하였지마는, 이것은 해마다 開催하고 있는 成文化된 開催計劃案이다. 또한 同 計劃案대로 繼續 施行하여 왔으니 規程화된 셈이다. 또한 同 規程은 開催主務部인 文化公報部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規程은 13회에 이르는 동안 한번 補正된 것이다. 1961年 政府에서는 이 大會를 定期例年行事로 定함과 同時 이에 對한 大會 開催計劃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提示하면

1. 目的
2. 期間
3. 場所
4. 種目 및 參加資格
5. 施賞
6. 施行要領
7. 財政

以上 7項으로 되어 있고 가장 重要한 審査委員會와 審査基準, 種目에 對한 制限時間을 明文化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듬해에 마련한 規程(開催計劃案)을 보정(補正)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1~3 項까지 같고,
4. 主催
5. 參加資格

6. 行事種目 및 制限時分과 日時

7. 施賞內容 및 施賞日時

8. 審査委員會

으로 되어 있다. 이 規程은 오늘까지 그대로 適用되고 있다.

目的

여기서 1961년의 規程인 1項의 目的을 보면 「仲秋節을 期하여 全國的을 民俗藝術競演大會를 開催하여 民族의 名節을 慶祝하고 숨은 民族藝術을 發掘하여 자칫하면 忘却하기 쉬운 傳統藝術을 再認識하고, 庶民의 情緒生活의 結晶인 藝術을 振興하여 全國에 和平한 氣運을 造成하고 革命課業에 奮進하는 國民을 慰勞코저 함.」

이와같이 여기서도 忘却하기 쉬운 傳統藝術을 再認識하고 振興시키는데 있음을 明確히 하였다.

亦是 그 以後 補強한 規程인 1項 目的을 보면 「全國에 散在하여 있는 우리 民族固有의 民俗藝術을 發掘育成하여 이를 길이 保存하고 發展 向上시키는데 있음.」

이라고 明示하르로서 61年 規程과 5같은 趣旨이며, 다만 이를 簡明하게 要約한 것이다.

以上과 같이 競演大會는 目的에서 밝힌 바와 같이 全國적으로 散在해 있는 鄉土文化藝術을 發掘保存함에 있다. 사실 現代文明社會에서 疎外視되어 자칫하면 泯滅되기 쉬운 傳承藝術은 이러한 年例의인 契機로나마 行事가 開催되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開催期間

다음 2項의 開催期間을 보면 3日間으로 되어 있다. 實際 3日이란 期日로는 全國的 行事로서는 未洽하다. 勿論 財政事情도 있지만은 이제 13年이란 年輪이 거듭되고 보니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많이 向上된 以上 앞으로는 보다많은 時間의 配當이 考慮되었으면 한다.

이 時間制限으로 各市 道別로 出演種目を 보면 平均 2種目に 그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道 豫選에서 脫落되었거나, 또는 더 種目を 參加시키고 싶어도 못하고 말게 된다. 따라서 期日의 延長은 그만큼 時間이 많으니까 參加種目が 많아진다.

參加資格

다음 參加資格을 規定하고 있는 바 本選인 全國競演에 參加할 수 있는 팀은 該當 市·道의 豫選을 通過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構成員은 該當 市, 道間에 現住해야 하며 非職業的인 團體나 個人이어야 한다.

이 規定은 다시 말해서 民俗本然의 土着的이며 素朴하고 原形의 維持度에 力量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말해 두고 싶은 것은 市·道 豫選이란 過程이다. 大會自體가 優劣을 다투는 競演이고 보니 自然 入賞爲主의 豫選이 된다. 따라서 民俗本然의 價値判斷이 흐려질 수도 있고 展示爲主의 誇張이 介在될 수도 있다. 놀이의 規模나 小道具衣裳까지도 介意케 된다.

그 例로서 제1회부터 8회까지만 하여도 그렇게 規模가 크지 않았던 것이 제9회부터 제13회까지만 보아도 最優秀 大統領賞 入賞팀은 出演人員數만도 200~500名을 헤아리는 大部隊이고 道具나 衣裳도 大端한 것이었다.

그러나 制限된 時日과 競演이란 性格으로 보아 當然의 論理이지만 一考되어야겠다.

參加種目

參加種目を 보면, 農樂 假面舞踊劇, 民俗놀이의 3個部門으로 例年화되어 있었으나 제3회에 단 民謠部가 있었다. 제10회인 1969년부터 音樂으로 民謠, 舞踊分野에서 民俗舞踊이 漆加되

어 5個種目으로 規程되어 있다. 따라서 그 前에는 民謠나 民俗舞踊은 다 같이 民俗놀이 分野에 屬해 審査하여 왔으나 年輪이 더함에 따라서 競技種目도 部門別로 審査케 된 것은 妥當之事이다.

여기에 한 種目を 더 追加하고 싶은 것은 民俗工藝部門도 添加되었으면 한다. 왜 그런고하니 各地方에 내려오는 民俗工藝도 하나의 傳統的 造形藝術인 以上 純粹藝能만 할 것이 아니라 技能으로서의 造形藝術의 參與가 바랍직하다.

또한 目的에도 있듯이 生活情緒의 函義으로서도 크게 振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傳承工藝品の 生産獎勵 및 國內外展示效果도 크다고 생각된다. 몇年이나 또는 間或 있는 民藝品 展覽會가 있으나 이는 極히 制限된 展覽에 不週하다. 따라서 全國的으로 雲集하는 國民이나 外國觀覽客에게 해마다 開催하는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正規種目으로 取扱하게 되면 그야말로 各地方의 民俗工藝術이 進展될 뿐 아니라 祭의이 性格도 綜合的 民俗藝術大會가 되리라 생각된다.

2) 競演大會 審査基準

어느 大會를 莫論하고 審査 및 評價란 가장 重함은 말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 大會自體의 權威와 또한 參加者의 士氣에 直接 影響을 미쳐 本來意圖했던 大會의 目的에 成果를 판 가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民俗藝術競演大會는 어디까지나 民俗藝術의 發掘保存과 振興에 있는 만큼, 施賞目的도 獎勵에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大會처럼 過熱한 競爭과 成敗意識의 性格을 띤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大會인 以上, 본 民俗藝術競演大會도 審査基準을 마련하였다. 제10회(1969年)以前과 以後것을 參考로 記載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1) 審査議決定足數
- (2) 選定種別
- (3) 節次

以上 크게 3項으로 分析할 수 있다.

여기서 選定種別을 볼 것 같으면 제10회 以前까지는 農樂, 民俗놀이, 假面舞劇의 3種目으로 分類審査하였으나 제10회부터는 民謠, 民俗舞踊 部門으로 添加 分類 審査하였다.

賞 別

大統領賞~綜合最優秀賞으로 團體팀이 주어지며,

農樂, 假面劇 民俗놀이, 民謠, 民俗舞踊의 五個種目中에서 最高得點 1個팀에게 준다.

國務總理賞~綜合優秀賞으로 亦是 團體 위 種目에서 第二位를 차지한 1個팀에게 준다.

文化公報部長官賞~團體三位格이다.

以上이 團體賞에 屬한다. 文化公報部長官賞은 제10회부터는 5개팀에 受賞되었고, 제1회와 제9회는 2개팀, 나머지 제3회~제8회까지는 3개팀에게 주었다.

個人賞~全體選手中 特히 個人技에 優秀한 者에게 주는데 普通 5名内外이다.

功勞, 獎勵賞~功勞를 致賀하고 勸獎하여 주어 진다.

但 獎勵賞을 除外하고는 本大會에서 受賞한팀 또는 個人은 除外한다.(제10회審査要領)고 되어 있어 되도록이면 同種同人에게 施賞重復을 避하려는 合理的인 方案이다.

節次(審査要領)

審査委員 3分の 2 以上の 出席으로 한다는 議決定足數를 말한다.

採點은 大統領 國務總理賞은 全種目を 一括하여 最高得點 順位로 定하여진다.

나머지 文化公報部長官賞은 各 部門別로 나누어 最高得點팀으로 定하고 있다. 따라서 種目別 順位는 大統領 國務總理賞에는 適用이 안되고 있다.

이 點 一考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種目別 審査 및 施賞은 제3회인 1962年度에 한 번 施行되었는데 種目別審査 및 施賞의 例라고 하겠다.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規定(1)

※現在 適用되고 있음

一. 目的

全國에 散在하여 있는 우리 民族固有의 民族藝術을 發掘調査하여 이를 길이 保存하고 發展 向上시키는데 있음.

二. 期間

三. 場所

四. 主催

文化公報部, 韓國文化團體總聯合會

五. 參加資格

1. 代表하는 郡(市), 道(서울, 釜山市)에 現住하는 者(非職業的인 者)
2. 各郡 豫選大會를 經由하여 該當道 豫選大會에서 優勝한 者 및 團體
3. 該當 道에서 優秀한 團體로 추천된 非職業的인 團體 및 個人

六. 行事種目 및 制限時分과 日程

1. 農樂 (30分)
2. 假面舞踊劇 (40分)
3. 民俗놀이 (30分)
4. 民謠
5. 民俗舞踊

但 競演日程은 追后 決定함

七. 施賞內容 및 施賞日時

1. 施賞部門

(1) 大統領賞 (1個팀)

綜合最優秀賞 : 賞狀 및 副賞과 優勝旗

(2) 國務總理賞 (1개팀)

綜合優秀賞 : 賞狀 및 副賞

(3) 文化公報部長官賞 (3個팀)

賞狀 및 副賞

(4) 個人賞 (3人)

賞狀 및 副賞

(5) 功勞賞 (6人)

賞狀 및 副賞

(6) 獎勵賞 (若干名)

2. 施賞日時

八. 審査委員會

文化公報部次官을 審査委員長으로 하며 斯界權威者를 위촉하여 構成한다.

九. 參加團體 補助金支給

各道 代表팀의 中央決選參加를 위하여 參加補助金を 交付 支給한다.

十. 其他參考事項

1. 式 順
2. 競演場 및 市街行進
3. 賞狀(案)
4. 審査基準(案)

※ 이 民俗藝術競演大會規程(開催計劃案)은 1961年 仲秋節 慶祝으로 開催할 當時의 計劃案이며 오늘날까지의 競演大會規程의 根幹이 되어 왔다.

앞에 掲載한 現今의 規程과 對照하여 보면 그 追移를 알 수 있기에 실은 것이다.

仲秋節 慶祝

民俗藝術競演大會開催計劃(案) (Ⅱ)

1. 目的

仲秋節을 期하여 全國적으로 民俗藝術競演大會를 開催하여 民族의 名節을 慶祝하고 숨은 民族藝術을 發掘하여 자칫하면 忘却하기 쉬운 傳統藝術을 再認識하고 庶民의 情緒生活의 結晶인 藝術을 振興하여 全國에 和平한 氣運을 造成하고 革命課業에 奮進하는 國民을 慰務코저 함.

2. 期間

郡 豫選 大會~8.25~8.26(2日間)

道 豫選 大會~8.31~9.2(3日間)

中央決選大會~9.11~9.13(3日間)

3. 場所

豫選 大會~各道 郡廳 所在地

中央決選大會~昌慶苑

4. 種目 및 參加資格

ㄱ. 民俗藝術部

農樂을 除外한 地方固有의 舞蹈 假面劇 歌唱 및 이에 準하는 民俗藝術로서 團體 個人을 不問하고 參加할 수 있음

ㄴ. 農樂部

各地方固有風俗을 지닌 農樂

5. 施 賞

審査結果에 따라 다음과 같이 施賞한다.

ㄱ. 各部 優勝~優勝旗 및 副賞

ㄴ. 各部準優勝~賞牌 및 副賞

ㄷ. 各部個人賞~賞狀 및 副賞

6. 施行要領

ㄱ. 郡 豫選大會

(1) 面單位로 出戰하는 代表(팀)이 郡單位 豫選大會에서 競演한다.

(2) 審査는 郡에서 委囑하는 審査委員會에서 擔當한다.

(3) 開催期間은 8. 25~8. 26의 2日間으로 하되 該當 郡 事情에 따라 多少 變更할 수 있

다.

(4) 郡 豫選大會에서 優勝한 代表는 道豫選大會에 參加할 資格을 獲得한다.

ㄴ. 道 豫選大會

(1) 郡豫選大會를 거쳐 出戰하는 郡代表로서 競演大會를 開催한다.

(2) 道 豫選大會에서의 審査는 道知事가 委囑하는 審査委員會가 擔當한다.

(3) 原則적으로 8. 31~9. 2의 3日間 開催하되 事情에 따라 期間 및 日字를 多少 變更할 수 있으나 中央決選大會 參加代表가 充分한 最終練習 期間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 道 豫選大會에서 優勝한 各部팀은 中央大會에 道代表로서 參加한다.

ㄷ. 中央決選大會

(1) 道代表로 選定된 팀으로서 中央에서 決選大會를 開催한다.

(2) 期間은 9. 11~9. 13의 3日間으로하여 仲秋節 當日 終了와 함께 施賞式을 舉行한다.

(3) 場所는 昌慶苑으로 하고 必要한 擴聲 및 照明施設을 準備한다.

(4) 日程은 道代表팀의 決定을 기다려 追後 發表한다.

(5) 決選大會의 審査는 公報部長官이 委囑하는 斯界이 權威者로 構成된 審査委員會가 擔當한다.

ㄹ. 市街行進

(1) 仲秋節 當日 全參加팀이 市街行進을 實施한다.

(2) 市街行進의 準備 및 運營은 公報部에서 擔當한다.

ㄹ. 서울特別市 및 以北五道

(1) 서울特別市는 京畿道와 合同하여 參加한다.

(2) 以北五道는 豫選大會를 開催하지 않고 公定性 있는 選拔委員會를 構成하여 參加代表를 決定할 수 있다.

7. 財 政

各道에 君數에 比例하여 다음과 같이 大會 開催 補助金을 支給한다.

A級 慶北 慶南 全南 京畿 江原

B級 全北 忠北 忠南

C級 濟州 以北五道

※ A級은 25, 000원

B級은 20, 000원

C級은 10, 000원

以上과 같이 同 案을 보며는

1. 草創期의 計劃案으로서는 相當히 緻密하게 되어 있다.

2. 參加資格 豫選 決選 選拔基準이 오늘날 것보다 仔細히 明示하고 있다.

3. 施賞을 위한 競演種目이 現今의 5個種目에 比하여 單只 民俗藝術部分과 農樂部分으로 2大別로 되어 있는 點.

4. 賞도 各部에 優勝 準優勝으로 定한 點.

5. 參加地域팀을 서울과 京畿道를 合同參加시키고 以北五道는 豫選없이 選拔委員會에 依해서 參加代表팀을 定하는 點.

6. 補助金制度를 實施하되 各 道를 A, B, C 級으로 나누어 加減케한 點 등이 注目할만하다.

審査基準(案) I.

<1968. (제10회까지 適用)>

1. 審査議決定足數

(1) 文化公報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한 全審査委員 3分2 以上の 出席으로 審査를 進行한다.

(2) 各賞 受賞者 決定을 위한 審査議決에 있어서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第2次 投票로 決定하고 2次投票에서도 同數인 경우에는 委員長이 이를 決定한다.

2. 選定種別 및 節次

(1) 大統領 및 國務總理賞

農樂, 民俗놀이, 假面舞踊劇의 全參加競演團體中 綜合最優秀(勝)팀과 綜合優秀팀의 各 1個 팀을 選定하여 綜合最優秀팀에 大統領賞을 綜合優秀팀에 國務總理賞을 受賞者로 決定한다.

(2) 文化公報部長官賞 (3個팀)

大統領 및 國務總理賞 受賞팀을 除外한 農樂, 民俗놀이, 假面舞踊劇의 3個部門에 있어서 各 部門別로 最優秀팀 1個팀을 選定하여 文化公報部長官 受賞者로 決定한다.

農樂部 1個팀

民俗놀이部 1個팀

假面舞踊劇部 1個팀

(3) 個人賞 (3人)

全競演團體中 特出한 演技者 3人을 選定하여 個人賞 受賞者로 決定한다.

但 本 大會에서 過去 個人賞을 受賞한 바 있는 者는 除外한다.

(4) 功勞賞 (6人 또는 團體)

競演團體中 該當部門을 위하여 功勞賞等 受賞者를 除外한 團體 또는 個人中 獎勵할 價値가 있는 有望한 者(團體 및 個人) 若干名을 選定하여 獎勵賞 受賞者로 決定한다.

審査基準(案) II

1969年(제10회)以後適用

<審査基準 I, II의 1項~3項은 內容이 同>

4項 審査方法

第1案

1) 方案

가. 審査委員은 各 競技種目的 成績順位를 다음 要領에 의거 作成提出한다.

나. 作成提出된 成績表는 順位配定表에 依한 點數를 集計하여 得點順位로 受賞者(팀)을 決定한다.

다. 作成提出된 成績表에 依한 點數를 集計하여 得點順位로 受賞者(팀)을 決定한다.

2) 要領

가. 大統領賞, 國務總理賞, 文化公報部長官賞 大賞種目

1) 各部門別(5個部門)로

1位에서 15位까지 競技種目名과 成績順位를 作成提出,

2) 提出된 成績表를 集計 受賞팀 決定

最高得點~大統領賞

2位得點~國務總理賞

3位~ 7位~文公部長官賞

(但 部門別優先順位)

나. 個人賞

가) 全 競演을 通하여 特出한 演技者 10人을 順位別로 作成提出,

나) 提出된 成績表를 集計 得點順位로 6人을 選定.

다) 功勞賞 獎勵賞

가) 全競演種目を 通하여

團體 10팀, 個人 10人을 各各 成績順位로 集計決定.

나) 過去에 受賞된 團體 또는 個人 및 本大會에서 大統領, 總理, 文公部長官賞, 施賞 大賞팀은 除外.

다) 功勞賞, 獎勵賞, 區分決定은 審査位에서 調整

3) 配 點

1位 20點

2 " 18 "

3 " 16 "

4 " 14 "

5 " 12 "

6位 10點

7 " 8 "

8 " 6 "

9 " 4 "

10 " 2 "

第2案

1) 方案

가. 每 競演種目마다 別添 採點表를 審査委員에게 配表하여 採點케 하고

나. 每 競技 終了後 採點表를 回收, 集計하여 決定하다.

다. 個人賞 大賞은 全競技 終了後 採點表를 回收, 集計 決定한다.

2) 採點表(別添)

農 樂

(市道팀)

구분	점수	배 점	점수(평점)
의 상		20	
소 품		10	
개 인		20	
단 체		50	
계		100	

특 기 사 항

假 面 劇

(市道팀)

구분	점수	배 점	점수(평점)
가	면	20	
의	상	20	
소	품	10	
단	체	30	
개	인	20	
	계	100	